

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...

여러분은 현재 “공부를 한다” 라는 목적으로 [유학]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재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관리국에서 [자격외활동허가]를 받아야 합니다. 단, 일본어과 신입생은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입학 후 3 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

최근, 유학생이 범죄에 연류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입국관리국·경찰의 적발과 단속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.

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(무허가자격외활동)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
◆무허가자격외활동의 죄 - 벌금 200 万円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 (입관법 제 73 조)

◆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

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- 벌금 300 万円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 (입관법 제 70 조 제 1 항 4 호)

또한 강제퇴거 (입관법 제 24 조 제 4 호 1)



* 학교는 제적처분 (BIL 에 재적했던 기록은 없어집니다.)

최단이라 해도 5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.

자격외활동 위반이란...

자격외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.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상기 무허가자격외활동과 같이 적발을 받고 처분됩니다.

◆활동 허가시간

유학생의 경우 주 28 시간 이내 (방학중이라도 1 일 8 시간 이내) 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.

◆활동내용

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는 자격외 활동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0 만엔의 벌금에 처합니다.

• 풍속영업점 - 손님을 접객하는 카바레·스낵바 등, 가게안의 조명이 10 룩스 이하의 찻집·바 등, 마작가게, 빠칭코, 슬롯머신 설치업소, 게임센터 등

• 점포형 성풍속 특수 영업점 - 쇼랜드, 안마시술소, 스트립쇼장, 러브호텔, 성인샵 등

•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 영업점 - 파견·출장 마사지, 성인비디오 통신 판매 등

• 영상 송신형 성풍속 특수 영업점 - 인터넷상에 외설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영업 등

• 무점포형 전화위성 소개영업 - 이른바 투샷 다이얼, 전신다이얼 등

• 풍속점 (상기에 기재 하고 있는 가게) 의 청소

• 풍속점 (상기에 기재 하고 있는 가게) 의 광고지와 티슈 등의 배부

*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나 맨션 등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(광고지 등이 풍속점의 것이 아니더라도) 주거침입으로 체포됩니다.

* 경찰에게 도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지와 티슈 등을 배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

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려면...

일본 입국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
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해 주세요.



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자격외활동허가서가 교부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
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았으면 ...

- ◆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외활동허가가 기재된 재류카드를 소지해주세요.
- ◆9월과 2월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과 아르바이트 상황에 대한 조사용지를 배부합니다.
아르바이트 장소나 내용에 변화가 없어도 반드시 기입해서 제출해주세요.

☞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교무부로 와 주세요